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7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무역정책과 윤상흠 과장(2110-4829), 이윤진 사무관(2110-5316)		

FTA에 따른 제조업·서비스업 피해지원 쉬워진다

- 7.18일부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령 시행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 홍석우)는 미국,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제조업·서비스업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7.18일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이 개정 시행 된다고 밝힘

○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, 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,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로,

- '08년 제정·시행되었으나,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지원 실적은 저조하였음

* '08년부터 무역조정지원기업 7개사 지정, 융자 22.5억원, 상담 0.64억원 지원

○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'12.1월 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과 '12.6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 기반을 완료하였음

< 무역조정지원법 개정법령 주요내용 >

○ **(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)** 6개월간 매출액·생산량 20%→10% 감소
○ **(경쟁력확보 상담지원근거 신설)**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없이도 6개월 간 매출액·생산량 5% 이상 감소 시 상담지원 가능
○ **(1인사업주 지원근거 신설)**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무역조정지원 근로자 지원 가능
○ **(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보강)**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대행 등 지원업무 추가

□ 법령 개정을 통해 7.18일 이후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기도 훨씬 용이해짐

○ 상담 지원요건의 경우 '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% 이상 감소한 경우'로 규정하여, 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* 대비 대폭 완화하는 한편,

- 고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발생 이전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**하는 등 기업 편의성을 제고함

*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% 이상 감소한 경우
** 작성서류를 4종→2종으로 간소화하고, 무역조정지원센터(중소기업진흥공단)의 실태조사를 통해 무역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○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'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%(기존 20%) 이상 감소한 경우'로 완화하여,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, 상담지원 혜택도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○ 아울러,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과정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신청서 작성 등 기업의 제도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

□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미국,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따른 FTA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,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참 고 **무역조정지원사업 개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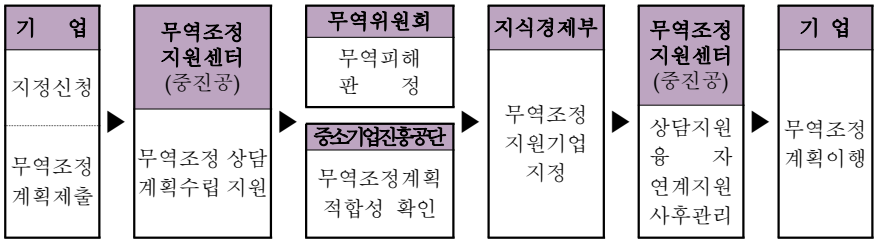
□ 주요 내용

○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**기업의 경쟁력 회복, 생산성향상, 구조조정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**

* **(융자지원)**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, 시설자금 30억원 한도
 변동금리 (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-0.6%차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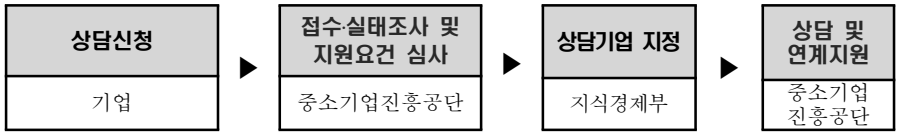
* **(상담지원)** 무역조정전략(사업전환, 구조개편 등), 경영·기술개선 및 경영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(총 비용 중 정부지원비율 80% 이내)

□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



* 지정요건 :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대비 **10% 이상** 감소

□ 상담지원 지원절차



* 지정요건 : 6개월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년도 대비 **5% 이상** 감소

□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현황 : 총6개기업(융자22.5억원, 상담 0.64억원)

* FTA별 지원 현황: (한-칠레) 4건 (한-EFTA) 1건 (한-ASEAN) 1건

< 무역조정지원사업 문의 >

○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 02-769-6661~3 (홈페이지 : www.taa.go.kr)